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38
----------	------

2019년 11월 2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9년 11월 2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푸른도시국장]

### 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수석전문위원 : 이 재 호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원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해주도록 한 규정이 있음. 그러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.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# 1) 제로페이 사업 추진실적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, 서울시에서는 ‘제로페이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.
- 지난 5월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산하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(조례 19건, 규칙 1건, 지침 1건)을 개정하였으며,
  - 5월에는 할인시설이 83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나, 9월말에는 165개로 확대시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
〈제로페이 월별 할인 시설수〉

월	5월	6월	7월	8월	9월
시설 수(누계)	83	95	100	104	165

- 지난 4월 제로페이 할인 내용을 담은 동 조례 개정안 심사시에 [별표 2]에 언급된 모든 시설에 적용하지 말고 계약방식, 운영방식,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설을 선별하도록 하였으며,
  -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동 조례로 적용하는 제로페이 할인 시설을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을 살펴보면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관련 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전체의 44%이며, 제로페이 할인 건수는 전체의 46%으로 나타났음.
  -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5천원의 30%를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할인건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〈 제로페이 운영 실적 〉

실국명 (시설명)	시작일	대상 및 할인율	누계(5월~9월)						
			전체 결제		제로페이 결제		제로페이 할인		
			건수	금액(원)	건수	금액(원)	건수	금액(원)	
서울시 총계(시설수 165개)			4,498,495	48,177,349,874	231,002	6,150,758,762	222,782	770,245,372	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시설			<b>1,113,813</b>	<b>4,128,156,751</b>	<b>101,789</b>	<b>336,273,560</b>	<b>101,789</b>	<b>144,125,936</b>	
			<b>25%</b>	<b>9%</b>	<b>44%</b>	<b>5%</b>	<b>46%</b>	<b>19%</b>	
1	서울 식물원	19.5.2	입장료의 30%	267,716	1,149,381,490	62,164	204,044,400	62,164	87,456,299
2	서울 대공원	19.5.3	입장료의 30%	846,097	2,978,775,261	39,625	132,229,160	39,625	56,669,637

## 2) 1년 할인 연장에 대한 의견

-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중이며, “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따릉이는 반값,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은 30% 할인”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.
- 할인혜택은 각 조례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, 제로페이 광고에는 할인기한에 대한 언급은 없음.
- 예산은 한번 증가하면 줄여들기 어렵다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, 혜택은 제공한 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.
- 또한 당초 6개월간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.



서울대공원



서울식물원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
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 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19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 제7119호, 2019. 5. 2.&gt;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0년 12월 31일</u>-----.</p>